

교육비 반환금액 산정기준(제32조의3제2항 관련)

1. 제32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교육비를 반환하는 경우

구분	반환사유 발생 시점	반환금액
가. 총 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교육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육비의 전액
	총 교육시간의 1/3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육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총 교육시간의 1/2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육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총 교육시간의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나. 총 교육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교육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육비의 전액
	교육 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육비(총 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교육비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2. 제32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교육비를 반환하는 경우: 이미 납부한 교육비에서 교육을 받은 기간의 교육비[교육비를 일할(日割) 계산하여 산정한다]를 뺀 금액

3. 원격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내용을 컴퓨터 등에 저장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